도시바코리아 그룹 행동강령

머릿말

- 1. 인권
- 2. 고객 만족
- 3. 조달
- 4. 생산 및 기술, 품질보증
- 5. 마케팅 및 영업
- 6. 공정거래관련법 및 대정부 거래
- 7. 뇌물
- 8. 환경
- 9. 수출규제
- 10. 반사회적 집단
- 11. 기술 윤리
- 12. 지적재산권
- 13. 회계
- 14. 기업 홍보
- 15. 광고
- 16. 작업장
- 17. 기업 정보 및 보안
- 18. 회사 자산과 이해 상충
- 19. 지역 사회와의 관계

범위 및 실행

머릿말

도시바 그룹은 사회에서 신뢰 받는 기업이 되고자 인류애를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 창조,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삶과 문화에 기여 등에 관한 경영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적정 이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직원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며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고객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영 비전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도시바 그룹 행동강령(Toshiba Group Standards of Conduct, 이하 '행동강령'이라고 한다.)은 상기의 경영 원칙과 비전을 현실화하고 이를 행동의 지침으로 삼기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도시바 그룹은 공정, 청렴, 투명의 원칙에 따라 사업 활동을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바 그룹 각 이사, 기업 감사인, 임원(이하 "임원들"이라고 한다.)과 직원은 본행동강령을 준수하여 환경, 인권, 지역 사회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생명과 안전, 법률, 규정, 사회적 기준과 윤리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질적으로 우수하고 건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1. 인권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각 국가 및 지역의 인권에 관한 모든 법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적 기준을 이해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 노동 또는 강요된 노동의 사용을 묵과하지 않고,
- (2) 도시바 그룹이 인권 침해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공급업체에게 인권침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 (3)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의 행동강령

- (1) 개인 간의 서로 다른 가치를 용인, 수용하고 성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프라이 버시와 인권을 존중하고,
- (2) 인종, 종교, 성별, 국적, 신체 장애 여부, 연령,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적 인 행동을 하지 아니 하며 신체적 학대, 성희롱, 권력 남용(직장 내 상사에 의한 괴롭힘), 또는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고객 만족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고객의 목소리와 의견을 바탕으로 그리고 고객의 니즈와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한 법규와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이하 "제품 및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의 행동강령

- (1)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 (2)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 (3) 고객의 요청 및 고객과의 상담 시 적절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즉각 응대하며,
- (4)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 (5) 고객의 개인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 사용, 관리한다.

3. 조달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모든 적용 법령, 법규 및 업계와 국제단체의 관행을 준수하고,
- (2) 공급업자(이하 잠재적 공급업자 포함)에게 도시바 그룹과 거래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 (3) 공급업자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달하고,
- (4)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급업자와 조달한다.

2) 도시바 그룹의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 (1)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공급업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 법령, 법규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고, 인권, 건전한 노동관행, 직업안전 성, 보건·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업체
 - 재정적으로 건전한 업체
 - ·도시바 그룹에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 가격 및 납기 일정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공급업체
 - ·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력을 보유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업체
 - •도시바 그룹 제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
 - · 회사 및 자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제품 및 /또는 서비스 공급 차질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된 업체
 - · 하청공급업자에게 도시바 그룹의 조달방침에 준하는 조달방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 (2)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이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괄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수행한다.
 - 환경 친화도
 - · 품질의 적절성 및 가격 책정의 합리성과 경제적 타당성
 - · 납기 준수 정도 및 공급의 안정성
- (3) 거래 이행 시 공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윤리적으로 건전한 상업 관행과 모든 적용 법령 및 법규를 준수하며 기업 조달과 관련하여 공급업체로부터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급업체와의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모든 구매 내역에 대하여 도시바 그룹 내부 규정에 따라 구매부서, 조달부서 또는 하청업체 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생산 및 기술, 품질 보증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생산, 기술, 품질 보증 관련 계약과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수하며,
- (2)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제품 개선을 촉진하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안전 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품질 높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기술을 도 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 (1)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품질 보증 약속과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 (2) 고도의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연구와 개발의 증진, 기술 인프라에 대한 지속 적인 개선, 기초 기술 및 기능적 인프라를 유지하여 기술 환경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고급 기술을 효과적을 활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 며,
- (3) 제품 및 서비스가 관련된 사고나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당해 정보의 진상을 즉각 규명하고 모든 적용 법령 및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정보제공, 제품회수, 경고통지·표시 등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마케팅 및 판매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모든 적용 법령 및 법규(상업뇌물 및 리베이트에 대한 금지 포함)를 준수하고 적절한 기업윤리에 따라 공정한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여 하며,
- (2) 고객의 니즈 및 수요를 충족시키는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 (1) 고객과의 모든 거래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사업 관행을 준수하여야 하고,
- (2) 모든 적용 법령 및 법규(상업뇌물 및 리베이트에 대한 금지 포함), 사업 관행,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념을 준수하여 마케팅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수행하여 야 하고,
- (3) '공정거래관련법'과 관련된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자유 경쟁의 실천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 (4)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최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공정거래관련법 및 대정부 거래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대정부 거래를 포함하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공정한 자유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모든 적용 법령 및 법규(이하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하고,
- (2)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공정거래관련법 및 관련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 정책과 절차를 규정하는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프로그램 및 사규를 제정하여 적절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도시바 그룹의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임직원들은

- (1)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규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사업 활동을 증진하여야 하며,
- (2) 가격 책정(견적 가격 및 입찰 가격 포함), 생산 및 판매 수량, 시장, 고객, 판매 지역, 또는 생산 능력이나 기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쟁업체와 합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지 규정은 각서, 의사록 등을 통한 실제 서면으로 작성된 것 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에도 확대적용되며,
- (3) 고객이 정부 기관인 경우,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사규를 준수하고 입찰 방해(주 1)나 발주와 관련하여 경쟁 업체와 담합(주 2) 하는 등의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 (4) 상기한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 참석하거나 약속이나 협정을 체결하거나 정보를 교류하거나 기타어떠한 행동에도 관여하지 아니하며,
- (5) 유통업체나 딜러들에게 도시바 그룹 회사 제품의 재판매 가격에 동의하게 하거나 당해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고,
- (6) 상기의 제2항에서 제5항의 규정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대한 제3자(판매대리점 포함)의 참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하며,
- (7) 정부관료 출신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적용 법령 및 법규, 출신 정부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며, 해당 정부관료 출신이 고용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마 케팅활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

(주 1) '입찰 방해'는 정부 기관과 거래 시, 예상 낙찰자에 대해서나 낙찰 가능 가격 등에 대한 정부기관의 의도를 질의하거나 정부 기관이 해당사항에 관한 이들의

의도를 실현하도록 하는 행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 2) '발주와 관련하여 경쟁업체와 담합'은 계약을 체결하게 될 예상 낙찰자, 입찰가격 및 기타 정보와 관련하여 경쟁업체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7. 뇌물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는 공무원(즉, 정부단체 또는 부처, 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 공공기관의 관료나 직원 또는 그러한 정부 또는 부처, 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나 국제 공공기관 또는 정당, 정당인 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는 공식 자격으로 행 위 하는 자)에 대한 가치의 지급 또는 지급 제안이나 약정을 금지하는 모든 관련 법규정을 준수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 (1)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정당 당원(정당 사무소 소유자 또는 해당 사무소 의 후보자 포함)과의 거래에 있어 불법이거나,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금지된 보수, 사업상의 접대, 선물, 기부, 사례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어떠한 대금이나 가치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제외), 불공정한 판매거래, 대출거래 및 유사 거래(보증거래 포함)에 개입하지 않으며,
- (2) 정부기관에 대한 마케팅과 관련하여, 해당 현금이나 혜택의 형식(예컨대, "수수료" 또는 "컨설팅보수")을 불문하고, 정치인(전직 입법기관 구성원 또는 해당 정치인의 현 또는 전직 비서 포함) 또는 정치인이 관련된 회사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 (3) 국제 사업 거래를 하는 경우, 불법 특혜니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 정부의 대리인에게 현금이나 기타 혜택을 제안하지 않으며,
- (4) 판매인이나 대리인과 같은 중개인을 포함하여 제3자가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 (5) 유통업체나 대리점과 같은 중개업체와 협력하는 경우 사전에 합리적인 보상 수준과 필요한 모든 조건을 명시하며 그러한 보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적용 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 (6) 관련 법률, 규정 및 회사규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정당이나 위원회에 기부하지 않고,
- (7) 임직원에 의한 사업상의 접대, 선물 및 기타 향응의 허용관련 규정이나 이에 대한 제한, 규율에 관하여 고객, 정부기관이나 기타 당사자가 확립한 관행 및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8. 환경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지구는 대체될 수 없는 자산이며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여 지속 가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하고,
- (2) 환경 관련 국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모든 적용 기준, 법령, 법규, 계약, 사업 가이드라인,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3) 환경 보호 기술을 채택한 우수한 제품을 개발, 공급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 (4)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 (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제조 활동에 노력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하여 모든 사업 활동 과정에서 에너 지 사용 효율 최대화, 천연 자원 사용 감축,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 (2) 매일의 영업 활동에 대한 장, 단기 행동 계획을 이행하여 환경 친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 (3) 정기적으로 관련 활동을 측정, 검사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하며 이상 사항 발견 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 (4) 신규 공장 건설 및 공장 이전 계획, 생산 시설 투자, 제품 기획 및 설계, 부품 또는 재료의 신규 구매 시 시의 적절하게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적용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바 그룹이 영업 활동을 하는 국가나 지역의 정부 또는 환경 당국에 의해 환경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도시바 그룹 회사가 그러한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적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6) 또한 환경 관련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바람직한 의사 소통 채널을 열어 놓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지구온난화 등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9. 수출 통제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거래를 삼가며,
- (2) 영업 활동을 하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모든 적용 수출 법령, 법규와 미국 제품 및 기술 정보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 법규를 준수하고,
- (3) 전술한 법령 및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하는 수출 통제 준수 제도(이하 '수출통제제도'라고 한다)를 준비하여 시행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 (1) 세계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저해하거나 다음의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기술의 거래를 삼가야 한다.
 - · 도시바 그룹이 영업 활동을 하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모든 적용 수출 통제 법규
 - · 미국 제품 및 기술 정보와 관련한 거래에 적용되는 미국의 수출 통제 관련 법규
- (2) 또한 수출통제제도에 명시된 거래와 관련한 세부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 거래 에 대한 최초의 문의부터 제품 및 서비스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3) 제품 및 기술의 최종 용도와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여 도시바 그룹의 제품이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제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반사회적 집단

1) 도시바 그룹 회사 방침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즉, 어떠한 유형이든 범죄활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파괴적이라고 간주되거나 사회에 위협이 되는 집단으로, 조직범죄단체 또는 테러그룹 등)과 사업상 거래를 포함하여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다.

2) 도시바 그룹 이사 및 직원을 위한 행동강령

임직원들은

- (1) 반사회적 집단이 당사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하며, 그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다(예컨대, 발행물 또는 서적의 구독 또는 구매, 물품의 구매, 광고물에 의한 지지, 서비스 제공, 현금 또는 물품제공 및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기타 활동).
- (2) 정당화될 수 없는 요구(주)는 단호하고 명백하게 거부한다.
- (3) 자금세탁(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는 것)을 규율하는 모든 적용 법규정을 준수한다.

(주) 여기서, "정당화될 수 없는 요구"란 폭력에 대한 위협을 가하며 범죄조직의 구성원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 또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기술 윤리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기술관련 활동에 있어 고도의 윤리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 (2) 모든 적용 법규 및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시바 그룹의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 (1) 인류의 건강과 행복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야 하고,
- (2)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적용 법규 및 통념의 변화를 인식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며 신의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여야 하고,
- (3)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조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 (4) 후배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 (5) 개방적이고 투명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의 활발한 의사 소통을 촉진시켜야 한다.

12. 지적재산권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특허법, 저작권법 및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 (2) 지적재산권이 있는 지적 활동의 결과를 보호하고, 당해 권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며, 제3자가 보유하는 합법적인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 (1)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획득 및 활용하고,
- (2) 마스크 워크(즉, 집적회로의 설계도),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 컨텐츠 등의 실제 저작물이나 당해 저작물에 대한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등 도시바 그룹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만들었다고 판단되는 지적재산권과 도시바 그룹 회사가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원 능력 등에 관한 사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며,
- (3)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제3자에 의한 당해 권리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 (4) 제3자의 합법적인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이에 대하여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다.
- (주)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마스크 워크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 및 기타 관련 권리를 의미한다.

13. 회계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회계 처리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관리 및 재무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 (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회계장부를 작성, 유지하며,
- (2) 정확한 회계장부가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 (3) 회계 관리 제도를 유지, 개선하고 재무 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 및 실행하도록 노력한다.

14. 기업 홍보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기업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 주주, 현지 지역 사회를 포함하여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얻고 기업 전략 및 재무 정보와 같은 사업 정보(주 12)에 대한 긍정적이고 시의 적절한 기업 홍보 활동을 통하여 도시바 그룹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노력하며,
- (2) 경영 정책을 회사 내에 충분히 홍보하며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정보 공유를 제고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 (1)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청렴하게 기업 홍보 활동을 해야 하며,
- (2) 적절한 수단으로 홍보하여 각 국가 또는 지역 공동체의 고객, 주주, 잠재 투자자, 구성원들이 도시바 그룹 활동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해를 얻도록 하며,
- (3) 사업 정보를 애널리스트 및 신문, 잡지, 방송국 등 언론매체에 공개할 경우에 는 공개하기 전에 기업 홍보 담당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주) '사업 정보'는 행동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을 살 만한 행위나 활동에 관한 정보(이하 '위험준수정보'라고 한다.)를 포함한다.

15. 광고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광고 활동을 활용하여 도시바 브랜드 및 도시바 그룹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신뢰를 제고하여야 하고,
- (2) 글로벌 기업이자 국가, 지역 차원의 '훌륭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도시바 그룹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2) 도시바 그룹의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 (1) 도시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도시바 그룹이 영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및 신뢰를 얻어 지속적인 사업 발전 달성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고,
- (2) 도시바 그룹을 더욱 호의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부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3자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 활동을 하지 않으며,
- (3) 광고에서 정치나 종교를 언급하지 아니하며, 인종, 종교, 성별, 국적, 신체 장애, 연령,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을 암시하여 모욕을 주거나 경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작업장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직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개발하여 직원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사이(즉 직장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2) 안전하고 안락한 직원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 (1) 자신의 권한 및 회사가 부여한 책임과 관련하여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맡은 업무를 달성하고 끊임없이 학습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2)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무와 일상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여 자신의 역량을 최대 한도로 극대화하여야 하며,
- (3)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질서 정연한 근무 활동 개발을 장려하는 근무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 (4) 직장 내 안전, 청결, 질서를 유지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17. 기업 정보 및 보안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기업정보(주) 및 기업자산(이하 도시바 브랜드 및 기타 무형 자산을 포함한다)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 (2) 소유권있는 정보를 존중하고 기업정보의 기밀을 유지하며 기업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이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 (3) 정보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복 및 시정 조치를 취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 (1) 고용 중이거나 고용 관계 종료 후에 적절한 내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기업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 (2) 고용 중이거나 고용 관계 종료 후에 기업 정보나 회사 자산을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이 되거나 도시바 그룹에 해가 되도록 사용하거나 기타 다른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 (3) 고용되기 이전에 획득한 제3자 소유의 정보나 기밀정보를 당해 제3자, 특히 이전 직원이나 고객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 (4) 개인정보는 적절한 목적하에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입수, 유지, 사용하고, 이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 및 회사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야 하며.
- (5) 정보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정보를 보호하며 회사 정보를 오직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 (6) 회사 소유의 정보기술 설비 또는 서비스를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 (7) 제3자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같이 제3자의 정보 관련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고,
- (8)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즉, 회사의 주식이나 유사한 자산 거래에 미공개 기업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 (주) '기업정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제외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다루는 개인정보, 고객 및 공급자 정보와 같은 제3자 정보 및 업체 정보 (이하 제3자 관련 정보를 포함함)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18. 회사 자산과 이해 상충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회사 자산(이하 도시바 브랜드 및 기타 무형자산을 포함함)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 (2) 항상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 (1) 회사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전용 또는 도용하지 않고, 회사 자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 (2) 회사 설비 및 시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 (3)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회사의 신뢰성이나 브랜드 명을 손상 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회사 내 직위 또는 권한을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고,
- (4) 회사의 고객, 공급업체 및 경쟁업체와 이해 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19. 지역 사회와의 관계

1) 도시바 그룹 기업 정책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 (1) 도시바 그룹이 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협력하며 당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 비영리단체(NPO)와 같은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고,
- (2)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임직원들을 전적으로 배려하여야 하며,
- (3)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와 기부의 공공성 및 이유를 고려하여 도시바 그룹이 영업 활동을 하는 각 국가 및 지역에 적절하게 기부를 하여야 하며,
- (4) 지역 사회와의 모든 관계 측면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시바 그룹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 (1) 지역 사회의 현지 문화, 전통, 관습들을 존중하여 도시바 그룹 회사들이 추진 하는 모든 활동을 지역 사회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 (2) 상호 존중 및 이해를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현지 지역 사회와의 의사 교 류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 (3) 지역 사회 활동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 (4)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고 진실되게 행동하며,
- (5) 직장, 공공장소 또는 온라인상에서 도시바 그룹의 일원임을 염두에 두고 말과 행동 모두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도록 노력한다.

범위 및 실행

1. 행동강령의 범위

- (1) 이사회의 결의나 적절한 기업 행위를 통하여 도시바 그룹 기업이 본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동시에 본 행동강령은 고문 및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된다.
- (2) 본 행동강령은 도시바 그룹의 법적 의무를 진술하거나 수립하는 것은 아니며, 여하한 자의 법적 권리나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대신 본 행동강령은 도시바 그룹의 가치와 자사 이사 및 직원에 대한 도시바 그룹의 기대를 명시한다. 많은 경우 이와 같은 가치와 기대는 적용 가능한 법적 의무보다 높은 수준일 수 있다.

2. 행동강령의 실행

- (1) 도시바 그룹 산하 각 기업은 본 행동강령의 실행을 전반적으로 담당할 '수석이 행담당관리자 (Chief Implementation Administrator, 이하 'CIA'라고 한다)'를 선임한다. 도시바 코퍼레이션의 CIA는 수석위험준수관리담당임원(Chief Risk-Compliance Management Officer)직을 겸임한다.
- (2) 필요한 경우, CIA는 '이행담당관리자'를 선임하여 행동강령의 각 조항의 실행을 책임지도록 한다. 주식회사 도시바 내에서는, 각 사내 기업의 사장 및 인사 부서의 부서장이 이행담당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행담당관리자의 자격으로 사내 기업이나 인사 사업부의 행동강령 이행을 책임지며 또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도시바 그룹 회사의 이행을 지도할 책임을 가진다.
- (3) 본 행동강령의 각 항목을 담당하는 도시바 그룹 산하 각 기업의 기업 인사 사업부(corporate staff division)는 관련 규칙이나 준수 제도를 제정하고 이행 규칙 제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여 도시바 그룹 회사의 이행담당관리자들을 지원한다.
- (4) 도시바코퍼레이션의 위험 관리 부서(Risk Management Division), 홍보 담당 부서(Corporate Communication Division) 및 법무 담당부서(Legal Affairs Division)은 본 행동강령의 유지와 도시바 그룹 회사들의 행동강령 채택 및 실행의 장려 및지원을 담당한다.

3. 사내 정보 보고 시스템 및 정보 제공자의 보호

- (1) 도시바 그룹 회사들은 사내 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바 그룹의 임직 원들이 위험준수정보(주 14)를 CIA나 위험 준수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 (2) 도시바 그룹 산하 각 기업의 임직원들은 입수한 위험준수정보를 감독자에게 즉각 보고하거나 당해 정보를 사내 정보 보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공한다.
- (3) CIA, 위험 준수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 및 위험준수정보를 받은 감독자는 즉각 대응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4) 선의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험준수정보를 제공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징계 행위

본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도시바 그룹 회사에 대한 징계 규칙/인사 교본 (Disciplinary Rules/Staff Handbook)에 따라 해고까지 포함되는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다.

(주) '위험준수정보'는 본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살만한 행위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